

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9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3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□ 제안이유

- 현수막 지정게시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관리로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2018. 4. 7. ~ 2020.12.31. (2년8개월)
- 위탁예산 : 무상
 - 게시 수수료의 일부를 관리비로 함(2017년 105,412천원)
- 대상시설 : 현수막게시대 61개소, 벽보게시판 34개소
- 현재 위탁단체 : 하남시옥외광고협회(회장 유진천)
 - 위탁기간 : 2015. 4. 7 ~ 2018. 4. 6.(3년간)

□ 세부 추진계획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심사방법 :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
 - 위탁사무 수행 인력·시설·장비, 재정부담 능력, 전문성확보, 사무처리 실적,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의 항목에 대해 심사

□ 향후 추진계획

- 2018. 4월 : 모집 공고(신청 접수)
- 2018. 4월 :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

○ 2018. 5월 : 위수탁 협약 체결, 민간위탁 실시

□ **관련법규**

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○ 「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□ **주관부서 검토의견**

○ 현수막(벽보) 지정게시시설은 1999년부터 하남시 옥외광고협회가
3년 단위로 수탁 관리해온 시설로서,

○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를 갖추고 재정부담 능력,
전문성확보, 사무처리 실적,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을 심사하여
적격 수탁단체를 선정해 위탁하고자 함.

□ **참고자료**

○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탁관리 계획

<관계법규>

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제19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7.8.11.>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
2.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

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수탁자는 「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 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시설·장비
2. 재정부담 능력, 책임능력과 공신력
3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수탁 대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하남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.

1. 당연·임명직 : 부시장, 관련 국·실·과장 3인 이내로 한다.

2. 위촉직 :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,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.

⑤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실·단·과·소장이 된다.

⑥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